

4. 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中改正令(案) 立法豫告

財政經濟院公告 第1995-88號 1995. 10. 11
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개정취지

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(1995. 8. 4. 법률 제4,952호)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.
- 나.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

근로자중 소득공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를 자본재생산 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기술자격 소지자와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함.
다.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 마련저축의 가입대상연령을 만 20세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인하하고 무주택자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.

- 라.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지방자치복권과 제주도관광복권의 당첨소득을 추가함.
- 마.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는 5호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

호 이상 취득하면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10월 18일까지 다

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종)를 재정경제원장관(참조: 조세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

자본재산업의 범위

구분(한국표준산업분류)	적용범위(기계류·부품·소재)
1. 섬유제품 제조업(17)	①펠트 및 부직포·특수사 및 코드직물·적층 및 도포직물 ·공업용 섬유제품·콘베이어벨트·제지용 직물 및 펠트 ·벨팅·전동용 벨트·심지 및 여과포
2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21)	①전기절연 가공지
3.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(24)	①기초화합물(산업용 가스·석탄화학물·검 및 나무화학물 ·비료 및 질소화합물·합성고무를 제외한다) ②의료 화합물·생물학적제제·사진용 화학물 및 감광재료 ·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(24299) 해당 화학제품
4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5)	①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②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·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 형제품
5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26)	①유리섬유·유리사·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·광 학유리 생지 ②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·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· 연마재·탄소섬유

구분(한국표준산업분류)	적용범위(기계류·부품·소재)
6. 제1차 금속산업(27)	<p>①합금철강·스텐레스강·합금강·고탄소강·열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</p> <p>②비철금속(제1차 제련·정련제품과 알루미늄·동·연의 제2차 제련·정련제품에 한한다)·동 및 알루미늄 압연압출 제품</p> <p>③철강주물·비철금속주물</p>
7.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(28)	<p>①금속조립 구조재·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저장용기·핵 반응기·증기발생기</p> <p>②기계장비 부품(금속단조·압형 및 분말야금제품)·금속처리제품(도금·용접·열처리제품에 한한다)·호환성 공구·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·금속 스프링·선박의 추진기 및 블레이드</p>
8.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	<p>①일반 목적용 기계</p> <p>②특수 목적용 기계(무기 및 총포탄을 제외한다)</p>
9. 사무,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(30)	<p>①컴퓨터 및 주변기기</p> <p>②복사기</p>
10.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 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(31)	<p>①전동기 및 발전기·전기변환장치·전기공급 및 제어장치·절연선 및 케이블·축전지 및 일차전지</p> <p>②전구 및 조명장치(광고용 램프 및 유사 조명장치를 제외 한다)·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장비 제조업(319) 해당 전기장비</p>
11.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32)	<p>①전자부품(광전관·방전관외의 전자관과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다)</p> <p>②전자식 전화교환기·반송장치·무선 송수신기·위성방송 수신기·무선호출 송신기·방송장치 및 폐쇄회로 TV조작</p>

구분(한국표준산업분류)	적용범위(기계류·부품·소재)
12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(33)	<p>①의료·측정·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(의료용 가구·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)</p> <p>②광섬유 및 광학요소·광학 현미경·촬영기 및 영사기·사진현상용기기·액정디바이스</p> <p>③시계부품</p>
13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4)	<p>①자동차용 엔진</p> <p>②차체</p> <p>③자동차 부품</p>
14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35)	<p>①선박 구성 부분품</p> <p>②기관차 및 철도차량·철도차량 부품</p> <p>③항공기용 엔진·부품 및 보조장치</p> <p>④이륜자동차 부품</p>

나의 손은 정밀시공 나의 눈은 품질관리